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33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피고가 2021. 4. 12. 원고의 B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21. 4. 14. 원고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1. 처분의 경위

가. 2023. 3.경 기준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세목	체납액수(원)	납부기한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5,556,750	2011. 8. 31.
2011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4,150	2011. 8. 31.
2011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0	2011. 8. 31.

나. 피고는 2012. 2. 6. 원고에 대한 위 지방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명의 D은행 및 E은행 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가 D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는 2017. 4. 3.경, E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는 2017. 4. 28.경 각 해제하였다[1].

다. 피고는 위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12., 2021. 4. 14. 원고에 대한 위 지방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각 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2].

라. 이 사건 압류는 2023. 1. 10. 각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2. 위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체납자 관리카드, 아래 압류 및 압류해제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압류는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방식의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중계기관에 압류요청을 하면 정보중계기관이 익일 오전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사실을 통지하고(정보중계기관에서 은행으로의 전송은 영업일에만 이루어지므로, 금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요청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통지된다), 같은 날 은행이 정보중계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에게 압류통지 수신 확인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조합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설정일은 2021. 4. 12.(월요일)이고, C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설정일은 2021. 4. 14.(수요일)이다.
종합하여 보면, B조합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2021. 4. 13.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C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는 2021. 4. 15. 각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통해 위 지방세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소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압류한 예금 채권의 잔액이 없어 압류 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된 2023. 1. 10.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1. 9. 1.부터 위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1. 나.항 기재 압류로 중단되어 그 압류가 해제된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일 경우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2. 4. 29.경 그 지방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압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라 위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 바 이를 단순히 압류 예금채권의 잔액이 없어 집행이 불능인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는 점, 집행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압류의 경우에도 압류 착수행위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며[3], 압류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쟁점을 미리 다루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 쟁점들은 압류가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 원고가 제기할 수 있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압류의 무효

3)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일(2021. 4.경)을 기준으로 하든, 이 사건 압류해제일(2023. 1. 10.)을 기준으로 하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피고가 유효한 시효 중단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의 개인별 예금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이었다. 이 사건 압류는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53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효이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 B조합, C은행에 각 도달할 당시 원고의 개인별 잔액 합계는 185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위 각 조항의 문언,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반하였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4].

3) 피고는 예금계좌의 잔액은 항시 변동하는 것이고, 이 사건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을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압류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압류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압류의 유무효를 판단한다면 피고와 같은 행정청이 압류를 하는 경우 사실상 압류 당시의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압류가 유효하게 되어 위와 같이 최저 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그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는 해석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압류는 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사법상 압류이자 공법상 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데,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뿐,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침익적 처분과 같은 송달 및 압류해제 신청을 포함한 불복절차 안내 등을 거치지 않고 있는바(압류 통지를 일반 우편에 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 11. 2.자 참고서면의 첨부서류 참조), 일반적 처분에 비해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적법한 송달 및 불복절차 고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②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법원의 압류결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의 처분을 통하여 성립하지만 그 법률효과의 측면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유사한 행위인바, 개인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압류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위 법들에 따른 압류라 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것이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보통의 경우 예금 채권 잔액이 185만 원 미만임에도 현금 등 별도의 생계유지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압류의 유효를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